# 적상초등학교 학생 출결 관리규정

2015. 3. 4. 개정 제 5차 2020. 3. 20. 제-개정 제 6차 2021. 3. 3. 제-개정

####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교 출결 관리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12조~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29조, 아동복지법 22조,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1303(2018.3.22.), 전라북도교육지원청 학교교육과-3114(2023.2.27.)을 준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적상초등학교 출결 관리로 학생 출석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당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위함이다.

#### 제2조 (기본 방침)

- ① 결석의 종류는 출석 인정 결석, 질병 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으로 구분되며, 모든 종류의 결석은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단 15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로 대체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처리는 출결증빙 대체자료를 활용한다.)
- ② 체험학습은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보호자 등과 함께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 제 2장 학생 출결 관리

#### 제3조 (결석)

- ① <u>질병 결석</u> < 결석신고서와 증빙자료 첨부 >
- ②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의 승인을 받은 경우(질병결석으로 3일이상 결석시)
-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 투약봉지,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질병결석으로 2일이내 결석시)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 ② 미인정 결석 < 결석신고서 제출 >

- ②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조사·연행·도피·구속, 학원수강 (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15일)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로 가정학습한 기간
- ①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등

※본교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운영 계획에 의거 미인정결석 학생 등 관리대응 참고하여 처리

#### ③ 출석인정 결석 < 결석신고서와 증빙자료 제출>

순	결석 사유	제출 서류
1	「학교보건법」제8조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또는 전염성이 인 <sup>7</sup> 질병(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병 포함)	
2	*학생선수 법정 인정 허용일수: 20일 *허용일수 초과 가능한 경우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	가하는
3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일수 1 20 5 - 결석신고서 • 담임교사의 서면 및 통신 확인
4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일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포함)에는 기타 부탁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출석으로 인정	
5	건강장애, 병원 치료 기간 중 병원학교 수	업 참 • 결석신고서

	여 및 화상 강의를 이수한 경우	• 확인서
6	학교장이 승인한 연간 15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 ( <u>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u> <u>여 '가정학습' 가능)</u>	사전 - 해당일 2일 전까지 교외체험 학습 신청서 제출 (가정학습은 1일전까지)      사후 -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 학습 보고서 제출
7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 정하는 경우	• 결석신고서 • 증빙자료

#### ♠ 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의심증상·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치료기간)도 가능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학교교육과-3114, 2023 출결·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 및 예방접종 학생의 출결시 「출결 증빙 대체 자료」 를 사용하고 학생의 증빙내용은 담임 확인 후 별도 보관 불필요.

#### ♠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증빙 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 ③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④ 기타 결석 < 결석신고서 제출>

- ②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④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 학부모님께서 직접 사유를 기재하고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학교장의 인정**을 받아야 함.

#### 제4조 (지각, 조퇴, 결과)

- ① 지각: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②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 ③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④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함.
- 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 제5조 (학년 수료)

- ①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 ③ 위 나 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 진급이 불가하므로 당해년도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 하여야 함.

#### 제6조 (체험학습)

- ① 체험학습은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보호자 동반)으로 구분
- ② 개인 교환학습
  - -1개월(4주)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및 연장하여 실시 가능
- (J) 단체 교환학습
  -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함. (연구 시범학교, 학교간 자매결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함.
  - -단체 해외 교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함**.
  - -도시학교와 농어촌학교의 교환학습시, 도·농어촌 학교별로 교환학습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 ④ 교외체험학습

-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u>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u>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 교외체험학습 승인일수 내 일반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운영방식 학교 자율 설정
- \*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u>보호자의</u> 책임 하에 실시한다.
-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제7조 (정원외 학적관리)

- 1) 입학 이후 유예나 면제를 받은 자
-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미인정 유학 포함)
- 3) 정원외 학적 관리자의 재취학 재취학 신청서 제출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	학년	반	번	성 명	전화		비고		
참 가 자									
기 간	2023	3년 월	일( 요	일) ~ 2023년	월 일(	요일)	( 일간)		
시 간		Ы	분 ~	시 분 ※빈	일신청의 경우에면	반 작성			
장 소									
		기간	Š	학생과의 관계	성 명		전 화		
인솔보호자									
체험학습	<예 시> ・국내・외 친지 방문 및 효도 체험학습								
주 제				세염약급 체험학습 등					
학습내용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빌	ː생하는 모든 제	반 문제	l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사항	확인합니다.								
		』이상 교외  겠습니다.	체험학습 시	l 주 1회 이상 아	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	여 안전, 건강을		
			서는 체험학	슼 실시 <b>3일 전까</b> 기	<u>[]</u> , 보고서는 체험	학습 온	한료 후 <u>7일 이내</u>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학생: (인)

신청인 보호자 : (인)

적상학교장 귀하

<u>제출</u>하여야 합니다.

1	담 임	부 장	교 감	교 장
결 재				
"				

###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성명				학년 반		학	년 반	번	
신청기간	2023년	월	일(	요일) ~ 2023년	월	일(	요일)(	일간)	
허가기간	2023년	월	일(	요일) ~ 2023년	월	일(	요일)(	일간)	
누적사용기간/ 인정기간				일 /	일				

위와 같이 허가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월 일 ( )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 (인)

보호자님 귀하

<sup>※</sup>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누 가

( )학교	제 ( )학년 ( )반 ( )번	이름 :
-------	-------------------	------

ᇓ 언 제

기 간	2022년	월	일(	요일)	~	2022년	월	일(	요일)(	일간)	
시 간		YI	분	~		분 ※반일	신청의	경우에만	작성		

■ 어디에서

교외체험학습			
장소	•		

■ 무엇을, 어떻게, 소감(필요시 사진 등은 뒷면 부착)

무엇을	가정의 가계, 돌아가신 분의 얼, 만난 친척, 추석 민속놀이, 고향의 자료, 추석 상차리기, 기타 국내외 각종 체험
어떻게	구체적인 체험 내용 등을 자유롭게 기록
소 감	교외체험학습을 통해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술

####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학생 : (인) 결 <mark>단 임</mark> 전 결 재

적상초등학교장

※ 보고서 제출기간: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체험학습 보호자 위임장

위임 받은	성	명				생년월일	<u> </u>		
사람 (임시보호자)	주	소							
위임하 사람	연팀	막처				위임자와의 관계	의		
	성	명				생년월일	<u>!</u>		
위임한 사람 (학부모)	주	소							
	연택	막처							
체험학습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체험내용									

위 위임받은 사람은 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안전사항을 포함하여 발생 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위임한 사람(학부모) (서명)

적상초등학교장 귀하

# 가정학습 신청서

가정학습	학년	반	번	성 명	전화	비고
신 청 자						

기 간	2023년 월 일( 요일)~ 2023년 월 일( 요일)( 일간)
장 소	※ 하교시간까지는 반드시 가정에서 학습(학원 및 독서실 등에서의 학습 금지)
학습 계획	※ 가정학습 기간 동안의 학습계획을 시간대 별로 작성
확인사항	<ul> <li>가정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li> <li>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키겠습니다.</li> <li>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가정학습을 추진하거나 정규수업시간 종료 전 외부활동 시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li> <li>가정학습 신청서는 가정학습 실시 1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제출하여야 합니다.</li> </ul>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학생 : (인)

신청인 보호자 : (인)

적상초등학교장 귀하

1	담 임	부 장	교 감	교 장
결 재				
,,				

### 가정학습 보고서

- 8	_	71
n.	一	ノ

#### ᇓ 언 제

기 간	2022년	월	일(	요일)	~	2022년	월	일(	요일)(	일간)	
시 간		Д	분	~ Д		분 ※반일	신청의	경우에만	작성		

#### ■ 어디에서

#### ■ 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결과(<mark>필요시 사진 등은 뒷면 부착)</mark>

학습 결과 보고 ※가정학습 신청서의 가정학습 계획에 따른 학습 결과 작성	
---	--

위와 같이 가정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학생 : (인)



적상초등학교장귀하

※ 보고서 제출기간: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결석·지각·조퇴·결과) 신고서

결	담임교사	교무
		전결 /
재		

제 학년 반 번 성명:

신 고 서	
본인은 다음과 같이 (	)하였기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신고합니다.
1. 기간 년 월 년 월 2. 사유 :	일부터 일까지 (일간)
	년 월 일
적상초등학교장 귀하	학 생 : (인) 보호자 : (인)
<ul><li>※ 질병결석 2일 이내 일때 증빙서(담임 확인 포함)만으로 가능</li><li>※ 질병결석 3일 이상 일때 증빙서증빙서류 중 한 가지</li></ul>	서 5일 이내에 본 신고서(담임확인서 포함) + 증빙 서류 제출류: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투약봉지 중 한 가지 또는 본 신고서류: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경우 증빙서류는 매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인정

,	방 법 (해당에 ()		날	짜	시	간	대화자 성명
	유선, 학교방문, 가정방문, 기타			일	시	분	
	담임교사 확인란			병결석 타결석 인정결 석인정			
	위 신고 내용이 사실과	틀림엽	없음을 획	라인합 <sup>L</sup>	니다.		
		년	월	일			
					담	임 :	(인)

### ◈ [ ]월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학생의 출석인정결석 등 처리 현황

학년 반

담임교사 성명: (서명)

≪ 교사가 확인하는 증빙자료(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유형
≫

①입원·격리 통지서

③PCR음성확인서)

⑤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⑦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⑨동거인의 PCR음성확인서

①기타(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②격리해제확인서

④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⑥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⑧보호자 확인서

⑩동거인의 격리해제확인서)

번호	성명	등교중지일	증빙서류	비고	담임교사 확인(서명)	학생 확인(서명)
3	홍00	3.7~3.8	7	3.2. 실거주 동거인 확진		
13	박00	3.10.~15.	8	3.9.~16. 실거주 동거인 재택치료		
15	안이이	3.18.	6	3.18. 의심증상 발현		
26	최○○	3.22.	4	3.22. 집에서 신속항원검사		
29	허〇〇	3.16.~17.	4,6	3.16. 집에서 신속항원검사, 3.17. 의심증상 발현		
7	정○○	3.29.~30.	3	3.29. PCR검사하고 30일에 결과수령		

###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학년 반 이름

	1차	2차	3차	비고
날짜	(예사) 3.14.			
결과	(예시) 음성			

-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신속항원검사 실시
- ※ 의심증상자가 1회 실시한 경우 등,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재구성하여 활용 가능
-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보호자 성명 (서 명)